

#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399
----------	------

2013년 7월 12일  
행정자치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3년 6월 14일, 이형석 의원외 10명
- 나. 회부일자 : 2013년 6월 18일
- 다. 상정결과 : 제24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3년 7월 1일 상정·의결(수정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이형석 의원)

#### 가. 제안이유

- 금고은행이 변경될 경우 기존의 금고은행으로 하여금 차기 금고은행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적극 협조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금고의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 보고 등에 대하여 매년 반기별로 서울특별시장에게만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바, 서울시의 금고업무 수행의 적정성 여부와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금고 운영상황에 대한 감시 및 견제를 위하여 금고은행의 보고사항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약정서에 금고변경시 이행사항을 포함되도록 하고, 금고은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인수인계 등 새로운 금고은행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제5항).

- 시장은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이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별 자금 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17조제3항 신설).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지방재정법」 ,  
「지방재정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4.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윤 병 국)

##### 가. 금고변경시 이행사항 약정서 포함 등 기존 금고의 원활한 협조 규정 신설(안 제15조제3항, 제5항)

- 본 개정안은 금고은행이 변경될 경우를 대비하여 기존의 금고은행으로 하여금 차기 금고은행이 금고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적극 협조하도록 약정서에 금고변경시 이행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금고은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전산시스템 및 문서 인수인계 등에 적극 협조하도록 조례에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임.
  - ※ 현행 제15조제3항에 따라 금고약정서에는 취급할 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 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의 해지, 약정서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는 바 필수사항으로 금고변경시 이행사항을 추가하여 작성하도록 함.
  - ※ 안 제15조제5항에 금고은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금고는 새로운 금고은행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규정 신설.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15호)이 개정(2012. 7. 11)됨에 따라, 기존 금고에게 유리하게 평가되는 일부 평가항목을 개선하는 등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라 지난 제246회 임시회에서 관련 개정안을 의결하여 공포·시행(2013. 5. 16)하고 있음.
- 현재까지 시금고가 변경된 경우는 없었으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및 관련 조례의 개정 등으로 향후 시금고 변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여지며, 기존 금고와 신규 금고 간에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규금고가 우리시 여건에 맞는 복잡한 세입전산프로그램을 개발·완료하지 못하는 등 세입업무 수행 곤란 및 납세혼란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업무 인수·인계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본 개정안은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임.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융기관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하여야 하며, 당해 금융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규칙이 정하는 금고로서의 모든 의무와 그 약정한 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기존 금고로 하여금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하도록 조례에 강행규정을 두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금고업무의 약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융기관과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하여야 하며, 당해 금융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규칙이 정하는 금고로서의 모든 의무와 그 약정한 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생략
- ③ 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의 지정기준과 절치는 금융기관의 금고업무취급능력, 주민이용편의 및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 현행 「서울특별시금고업무취급약정서」 에도 금고은행 변경시 차기 금고은행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금고 변경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약정서에 차기 금고은행에 대해 문서 및 시스템 인수인계 등의 업무협조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납세 및 세입업무 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금고업무취급약정서」 (2010. 7. 19) 중  
 제12조(금고은행 변경) ①금고은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을”은 차기 금고은행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②금고업무 수행을 위해 개발·운영하고 있는 전산시스템 중 인계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금고은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을”이 “갑”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③제5조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문서는 금고은행이 변경되는 경우 “갑”에게 인계한다.



- 지방재정법 제7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금고의 출납상황 등에 대한 검사권한은 서울시장의 고유권한으로, 시장이 보고받은 내용을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통보토록 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시장 권한 침해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위반이라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지방재정법」

제79조(금고에 대한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고가 취급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6조(금고에 대한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 1회 이상 금고의 출납상황과 장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 집행부(재무국) 의견

- 관련 법령(지방자치법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시금고의 근거법인 지방재정법 제7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금고의 출납상황과 장부 검사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서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서 시금고는 금고의 출납상황 등에 대해 시장에게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 금고의 출납상황 등에 대한 검사권한은 서울시장의 고유권한으로, 금고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을 곧바로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통보토록 하는 것은 지방 재정법령에서 규정한 지자체장의 검사권한을 법령상의 근거 없이 시의회 상임위원회에게도 부여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토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기존의 지방의회 권한으로도 자금운용 상황에 대한 자료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 제정이 필요치 않을 것으로 보임.

-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 소정의 지방의회 및 위원회의 서류제출 요구권과 동법 제41조 소정의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에 기하여 시장으로부터 해당 보고내용에 대한 자료들을 받을 수 있어 별도의 규정의 제정이 필요치 않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위와 같은 지방자치법상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임과 동시에 양 기관의 권한상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해 시의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조례상에 즉시 통보규정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간에 견제와 균형 원칙을 깨뜨리는 결과가 되어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넘는 것이라 보임.

- 이에 대해 시의회 입법자문위원의 입법자문을 받은 결과 동 개정안에 대해 3명중 2명은 적법하다는 의견이었으며, 1명은 권한침해라는 의견이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찬성 의견 〉

- ① 관련 보고내용이 지방의회가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등 「지방자치법」 제39조에 규정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파악하고 있어야 할 재정운영사항일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해야 할 사항이라는 점과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서류라는 점을 감안해본다면, 의회의 적법한 조례 제정권의 행사라는 의견
- ②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에는 법령 위반에까지 이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서울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규율하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금고업무 수행의 적정성 여부 및 투명하고 건전한 금고 운영상황에 대한 감시 및 견제를 위하여 시금고가 시장에게 보고한 내용에 대한 통보가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로 해석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

〈 반대 의견 〉

- ①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지방금고에 대한 검사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으로 이에 대해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권한침해라는 의견

-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행정을 통제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신의 의결사항이 집행기관에 의하여 잘 집행되고 있는 가를 확인하고 보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현재 금고가 보고하는 내용이 예산의 심의·확정과 결산의 승인 등을 위해 지방의회가 알아야 하는 범위<sup>1)</sup>와 「지방재정법」 제60조에서 주민에게 공시해야 하는 재정운영상황에 대한 관련 범위<sup>2)</sup>를 벗어나는 사항이 있는 지 여부 등을 살펴 관련 내용의 시의회 통보가 시장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한 검사 권한을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입법자문 의견 중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이 시장에게 보고한 금고운용 정보를 의회가 통보받도록 하는 규정이 해당 금융기관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여지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내지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등을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제2조, 제3조)하고 있어 개정안이 관련 법률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음.

- 
- 1)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는 감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
- 2) 「지방재정법」 제60조(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한 번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2.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3. 지방채·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4. 채권관리 현황
  5. 기금운용 현황
  6.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7.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8. 제59조에 따른 통합재정정보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방법,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이 시장에게 보고한 내용(매년 반기별로 일반·특별회계와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의 제출요구가 있을 때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보고 절차 및 시기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을 시장이 보고를 받은 때가 아닌 서울 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제출요구가 있을 시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함(안 제17조 제3항).

8. 심 사 결 과 : 수정안 가결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9. 소수 의견의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399
----------	------------

제안년월일 : 2013년 7월 12일

제안자 : 행정자치위원장

## 1. 수정이유

-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이 시장에게 보고한 내용(매년 반기별로 일반·특별회계와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의 제출요구가 있을 때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보고 절차 및 시기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을 시장이 보고를 받은 때가 아닌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제출요구가 있을 시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함(안 제17조제3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제출요구가 있을 시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수정안
<p>제15조(금고약정) ① ~ ② (생략)</p> <p>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할 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 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의 해지, 약정서 조문 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④ 시장이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새로운 약정이 체결될 때까지 금고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15조(금고약정) ① ~ ② (생략)</p> <p>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할 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 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의 해지, 약정서 조문 해석, <u>금고변경시 이행 사항, 유효기간</u>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5조(금고약정) ① ~ ② (생략)</p> <p>③ (개정안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신설〉</p>	<p>⑤ <u>금고은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금고는 새로운 금고은행</u></p>	<p>⑤ (개정안과 같음)</p>

<p>제17조(금고운용 보고)</p> <p>① 시장은 금고를 운영 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매년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p>	<p>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p> <p>제17조(금고운용 보고)</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lt;신설&gt;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7조(금고운용 보고)</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제출요구가 있을 시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p>
--	---	---

##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유효기간”을 “금고 변경시 이행사항, 유효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금고은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금고는 새로운 금고은행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제출요구가 있을 시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금고약정) ① ~ ② 생략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할 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 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 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의 해지, 약정서 조문해석, <u>유효기간</u>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④ 시장이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새로운 약정이 체결될 때까지 금고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15조(금고약정) ① ~ ② 생략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할 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 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 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의 해지, 약정서 조문해석, <u>금고변경시 이행사항, 유효기간</u>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u>금고은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금고는 새로운 금고은행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u></p>
<p>제17조(금고운용 보고) ① 시장은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매년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p>	<p>제17조(금고운용 보고) ① ~ 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 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 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설&gt;</u></p>	<p>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제출요구가 있을 시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p>